

# [붙임1] IRB 지속심의 승인유효기간 적용 변경 세부 사항

## □ 규정

○ HRPP SOP 제2장 4항 (1) 지속심의 기본원칙

IRB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모든 연구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.

- 현재 진행 중인 연구대상자에게 개입이나 상호작용을 중단한다. (연구대상자가 연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와 같이 안전이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)

- 새로운 연구대상자의 등록은 할 수 없다.

## □ 예시

변경 전	변경 후
승인유효기간이 2023.2.28.까지인 과제	
2023년 3월 지속심의 제출 2023년 4월 지속심의 완료 지속심의 보고기한 미준수 제출 시, 환자 등록 및 진행, 연구 데이터 인정	2023.2.28.까지 지속심의 제출 및 심의 완료 필수 승인유효기간 외 환자 등록 및 진행, 연구데이터 미인정